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4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1.

발 의 자 : 신장식 · 서왕진 · 차규근
한창민 · 강경숙 · 김재원
김선민 · 정춘생 · 이용우
이해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, 「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하고 있음.

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으나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, 일반적 고충 등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동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. 경찰공무원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 및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(안 제2조 단서 및 제6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신장식위원이 대표발의한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481호) 및 「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48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단서 중 “공무원과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”을 “공무원,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 및 「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교정·보호·검찰사무·마약수사·출입국관리 및 철도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

3의2. 조세범 처벌절차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

3의3.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공무원”이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6조제1항 단서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공무원,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 및 「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----- -----.
제6조(가입 범위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. 1. 2. (생 략) 3. 교정 · 수사 등 공공의 안녕	제6조(가입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3. 교정 · 보호 · 검찰사무 · 마약

<u>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</u> <u>에 종사하는 공무원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③ · ④ (생 략)	<u>수사 · 출입국관리 및 철도경</u> <u>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</u> <u>3의2. 조세범 처벌절차법령에</u> <u>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</u> <u>지명을 받아 조세에 관한 범</u> <u>칙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</u> <u>무원</u> <u>3의3.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</u> <u>무에 종사하는 공무원</u>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--	--